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1
----------	------

제출연월일 : 2009. 11. 26.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늘어나는 시설비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규모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비는 보조금 지원규모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농어촌과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내용 신설(안 제3조)
 -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운영프로그램
 -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826호(2009. 10. 29 ~ 2009. 11. 17)
 - 의견제출사항 : 없음
-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0조 내지 제23조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합 의 : 해당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p>
<p>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u>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해 회계연도 군세 총액 등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군세의 1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항 신설></u></p>	<p>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u>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생략></p> <p>1. ~ 6. <생략></p> <p>7. <u><신설></u></p> <p>8. <u><신설></u></p> <p>9. <u><7호를 9호로 변경></u></p>	<p>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u></p> <p>8. <u>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u></p> <p>9. <u>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u></p>